

**WARNING: Effective September 19, 2012, this form is no longer sufficient to comply with Civil Code section 55.3(b) because several statements required by the amended statute are not included.**

**건물주 및 입주자에 대한 중요 정보**

이 양식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어, 영어, 스페인어, 중국어,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. 시각장애인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양식을 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웹사이트의 주소는 [www.courtinfo.ca.gov](http://www.courtinfo.ca.gov)입니다.

귀하는 귀하의 건물 또는 부동산이 공공장소를 출입하는 장애인의 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1건 이상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현행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배상금 청구 또는 불만 관련 서류를 이 문서와 함께 수령하셨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아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
**귀하는 중요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**

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법(disability access laws)을 준수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중대한 의무입니다. 이러한 법적 의무와 장애인 편의시설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주 건축국(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)을 통해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. ([www.dsa.dgs.ca.gov/access/ud\\_accessmanual.htm](http://www.dsa.dgs.ca.gov/access/ud_accessmanual.htm)을 참조하십시오.) 또한 2009년 9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 편의시설 위원회(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) 웹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**귀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.**

귀하는 법원이 귀하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 전에는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 또한, **이 통지문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귀하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**

귀하가 받은 배상금 청구 또는 불만 관련 서류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률 분야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하여 효과적인 법적 조언 또는 대리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. 귀하의 거주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해당 카운티의 변호사 협회에 연락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.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도 연락할 것을 권합니다. 귀하는 이러한 배상금 청구 또는 불만 관련 서류에 대해 귀하가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아무도 귀하에게 다른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.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 또는 대리를 받는 것이 귀하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귀하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고, 이와 관련된 서류가 송달되었고, 공인 편의시설 평가 전문가(CASp, [www.dsa.dgs.ca.gov/access/casp.htm](http://www.dsa.dgs.ca.gov/access/casp.htm) 참조)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55.54조에 따라 귀하에게 제기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청구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원 유예(court stay, 일시 중지) 또는 조기 평가 회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귀하는 청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법원 유예 및 조기 평가 회의를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적 대리를 받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,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법적 대리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 웹사이트([www.courtinfo.ca.gov/selfhelp](http://www.courtinfo.ca.gov/selfhelp))에서 자신이 소송에 대해 법적 대리를 하고 답변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같은 웹사이트에서 소송에 대한 답변을 제기하는 양식, 그리고 법원 유예 및 조기 평가 회의를 신청하는 양식과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.

귀하를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배상금 청구 또는 불만 관련 서류를 보낸 변호사가 귀하의 변호사로부터 허락을 받을 때까지 더 이상 귀하에게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. 서류를 보낸 변호사가 귀하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귀하의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.